

- 인쇄 바로가기

미리보기

페이지설정

인쇄하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정)1988.5.1 규칙 제51호
- (개정)1989.6.22 조례 제 83호
- (개정)1989.6.23 조례 제 84호
- (개정)1989.6.23 조례 제 85호
- (개정)1989.7.22 조례 제 89호
- (개정)1990.2.12 조례 제112호
- (개정)1991.11. 6 조례 제159호
- (개정)1992.4.8 조례 제184호
- (개정)1992.10.7 조례 제203호
- (개정)1994.9.13 조례 제255호
- (개정)1995.1.1 조례 제270호
- (개정)1995.3.11 조례 제279호
- (개정)1996.1.11 조례 제314호
- (개정)1997.4.16 조례 제370호
- (개정)1997.8.7 조례 제383호
- (개정)1999.11.26 조례 제479호
- (개정)2000.9.20 조례 제514호
- (개정)2000.12.4 조례 제523호
- (일부개정) 2001.04.18 조례 제 537호
- (일부개정) 2001.10.09 조례 제 547호
- (일부개정) 2006.12.28 조례 제 735호
- (일부개정) 2009.11.19 조례 제 828호
- (일부개정) 2011.09.15 조례 제 892호

관리책임부서 : 보건위생과
연락처 : 2286-7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0·7, 97·4·16, 2006·12·28)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에 의한다. (개정 89·7·22, 2000·12·4, 2001·4·18, 2006·12·28)

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89·7·22, 95·1·1, 96·1·11, 99·11·26, 2006·12·28)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2. 삭제
3. 항결핵제 보급
4. 유료 접종
5. 검사
6. 치과진료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조례에 의거 수납한다. (개정 89·7·22)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92·10·7, 99·11·26, 2006·12·2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92·10·7, 개정 2000·9·20, 2006·12·28)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성동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 ③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신설 2000·9·20)

제4조(세입재활용) ① 삭제 (95·1·1)

②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 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 구입
3. 우수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4·8)

이 조례는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1)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